

정정보도청구권

-법률적 측면에서의 고찰

양삼승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언론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종래의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자세로서 취재보도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언론에 대한 간섭은 무조건으로 언론의 탄압이고, 이는 무조건적으로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릇된 생각이고, 언론의 자유에 못지 않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도 또한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무책임한 언론, 아무런 제약 없는 자유, 방종한 언론의 시대는 언론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서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언론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중대함, 언론이 가지는 민주사회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인 여론형성이라고 하는 신성한 기능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여 책임이 뒤따르는 언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I. 서 설

1. 의의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발행인이나 편집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주장 내지는 의견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 3347호로 제정된 언론기본법 제 4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취지

현대사회에 있어서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중대성은 여기에서 다시 부언할 필요도 없이 막대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신문을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고 입법, 행정, 사법부에 대응하는 「제 4부」라고도 하고, 일찍이 나폴레옹도 신문을 유럽에 있어서 「제 7의 대권」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영향력이 중대한 만큼 만일 언론이 보도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잃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입는 피해는 거의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인권 내지는 기본권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오랜 역사를 거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힘들게 쟁취한 현대민주국가의 대원칙인 언론의 자유가 자칫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어느 하나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민주국가의 대원칙의 조화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물론 현대 민주국가의 성립과정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의 필요성이 막중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이 주로 문제로 되어 왔었으나, 선진 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확보됨에 이르게 되자 점차 언론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문제로 되어 왔던 것이다.

3. 발 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언론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종래의 전통적인 법률이론에 의하여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즉 종래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이 행해지고 있던 시대에 있어서도 「정정」이라는 개념은 이미 생각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청에 의한 정정강제」(behördlicher Berichtigungszwang)의 제도는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의 법률이론에 의하더라도 언론에 의하여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우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신용훼손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고 또한 민사상으로도 언론이 위법하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에는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를 할 수도 있고, 나아가 민법 제 764 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하여,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이를 배상한다고 하는 원칙(민법 제 763 조, 제 394 조)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손해배상에 같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구제방법 중 형사법상의 방법은 그 본래의 목적이 행위자를 처벌함에 있는 것이어서 그 구제의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다가, 이를 위하여는 형사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고의를 요하는 등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나마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민법상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보더라도,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고의, 과실 등 실무상 입증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사정이 문제도 되고 또한 그 위법성 및 손해의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필요로 하고, 그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일반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되는 결과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신속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원래의 기사의 내용이 독자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동안에 정정의 보도가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독자의 기억이 소멸된 후에 정정보도를 하는 것은 기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이중의 피해를 주는 결과로도 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로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 이론상의 문제점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1789 년 8 월 26 일의 프랑스 대혁명이 있는 후 언론에 대한 검열제도가 폐지되자 새로이 얻어진 언론의 자유는 고삐 풀린 말 같이 방만, 자의로 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언론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무수히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1799 년에 베를리에(Berlier)는 비방적인 기사에 대한 형사상 처벌규정 및 민사상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위 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이던 뒤로르(Dulaure)는 신문에 의하여 자기의 명성을 침해 받은 자에게 응답권(droit de reponse)을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당시 뒤로르는 그 제안의 이론적 근거로서 첫째 언론에 대한 개인의 보호, 둘째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로부터의 독자의 보호, 셋째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과 관계된 개인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 그리고 끝으로 형사상 소추에 의한 해결의 불충분성을 들고 있었다. 이러한 베를리에 및 뒤로르의 제안은 당시 부결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특히 뒤로르의 위와 같은 응답권의 제안은 키칭거가 적절히 표현한 바와 같이 「법률적인 발명품」으로서 그 공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위 응답권의 제도는 기억에서 사라져있다가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자 언론탄압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1811년의 프랑스 형법은 언어 또는 서면에 의한 비방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1819년의 언론법은 관청에 의한 정정강제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다시 언론의 횡포가 심하게 되어 1822년에 국회의원인 메스타디에(Mestadier)는 신문이 개인의 가정이나 사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법안 역시 통과되지 못하게 되고 그러자, 메스타디에는 앞서 본 뒤로르의 발상에 생각아 미치어 위 응답권의 제도를 제안한바, 위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1822년의 언론법 제 11 조에 위 제도가 처음으로 규정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위 언론법에 시정된 응답권의 제도는 당초 뒤로르가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서 명예훼손적인 기사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신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특정하여 알려진 모든 사람(toute personne nommee ou designee)에 대하여 인정되고, 또한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비평에 대하여도 인정되게 되었으며, 위 응답권은 1881년의 언론법에 그대로 계수되어 아직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 제도는 1831년 12월 28일의 독일 바덴 주의 언론법 제 10 조에 규정되게 되었으며, 1831년에 벨기에, 1848년에 이태리, 1832년부터 1837년까지 사이에 스위스의 여러 주에서 이를 본받아 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4. 입법례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처음 발달된 응답권 제도는 다른 나라에 계수되면서 약간의 변형을 받았는 바, 이를 크게 나누면 프랑스형과 독일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즉 프랑스형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보상의 주장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연극평론이나 서평 등의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응답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속하는 나라들로서는 벨기에(1831년의 언론법 제 13 조), 이태리 (1948년의 언론법 제 8 조), 스페인(1879년의 언론법), 멕시코(1917년의 언론법 제 27 조), 콜롬비아 및 스위스의 테신(Tessin) 및 와트(Waadt)주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형은 응답권을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인정하고 있고 이에 속하는 나라로서는 오스트리아(1952년 5월 7일의 언론법 제 23 조), 노르웨이 (1902년의 형법 제 40 조), 스위스의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주 및 그라우빈덴(Graubünden)주, 유고슬라비아 및 그리이스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응답권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훨씬 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미국에서도 사정은 영국과 마찬가지로이지만 다만 네바다주와 미시시피주에서만은 1911년에 프랑스형의 응답권(right of reply) 제도를 인정 하고 있다.

한편 우리와 여러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앞서 본 프랑스 법을 모범으로 하여 메이지 6년의 신문지발행조목 제 16 조에서 위 제도를 채택한 이래 메이지 8년의 신문지조예 제 11 조, 메이지 16년의 신문지조 축 제 29 조 및 제 30 조, 메이지 20년의 신문지조예 제 13 조 및 제 14 조, 메이지 42년의 신문지법 제 17 조 및 제 18 조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 차 대전 전의 비민주적인 체제하에서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가 2 차 대전 후의 G. H. Q.(General Head Quarters, 연합군 총사령부)의 지령에 의한 출판통제법제의 철폐와 함께 일괄해서 폐지되어버리게 되었다(일본에 관한 위 부분은 「현대손해배상법강좌」 중 명예 · 프라이버시 편 p. 268 및 p. 270 에서 인용).

국제연합에서도 1952년의 협정에서 국가간의 차원에서 그릇된 보도를 금하고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right of correction」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위 제도는 독일형의 제도를 취한 것으로서, 국가간의 보도에 관해서 국가가 국가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말하자면 「국제법상의 응답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5. 특색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언론기본법 제 49 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기존의 우리법제 하에서 인정되고 있던 다른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 제 764 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죄광고 등)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첫째로 정정보도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언론기관의 고의, 과실 등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로 보도된 사실적 주장(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며, 셋째로 정정보도청구의 사건은 엄연히 보안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인정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기사나, 위법한 기사의 내용을 바로 잡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간행물 등에 자기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에 보도된 자로 하여금 원래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주장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경우에는, 자기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물론 후술하는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미 정정보도청구권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언론기본법이 제 49 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 표제의 제목을 「정정」 보도청구권이라고 하여 마치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내용의 권리인 듯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된다. 독일에 있어서도 초기의 단계에서는 「정정」이라는 의미가 담긴 「Berichtig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후에는 「응답권」, 또는 「반박권」, 또는 「반론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Entgegnungsanspruch」, 또는 「Gegendarstellungsanspruch」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프랑스의 「응답권」의 의미인 「droit de reponse」의 용어가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II. 요 건

1. 주 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의가 없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민법상 또는 상법상의 조합이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독일의 다수설 (Kitzinger, Hantzschel)은 위 단체 자체로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단체의 이사 또는 개개의 구성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나, 실제적인 고려에서 이를 긍정하는 설도 있다.(Löffler)

프랑스의 1951 년의 판례는 단체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법 인격이 필요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인적 결합이 법률생활에서 하나로서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Kobl)

생각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비 법인사단이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나, 조합의 경우에는 문제이다.

생각컨대, 정정보도청구권은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단위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기사가 보도된 경우, 위 단체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인격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연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단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것이 인정되면 주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로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독일의 통설이다. (Kraehling, Kitzinger Löffler)

우리나라의 언론기본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를 피해를 받은 「자」라고만 규정하여 「관청」이 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하다. 그러나 독일의 Reichspressegesetz 제 11 조에는 「관계된 공적 관청(Behörde) 또는 사인(Privat person)」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주의 Pressegesetz도 또한 「사람(Person) 또는 기관(Stelle)」라고 규정하여 관청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관청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청이라는 개념은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국가목적수행의 권한이 있는 항구적인 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관청은 행정청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일반의 행정각부 외에도 예를 들면 법원, 국립대학의 각 단과대학(Fakultat) 등 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그리고 의회도 여기의 관청에는 해당되고 외국의 관청도 해당됨은 물론이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한 부실기재에 관해서는 특별한 「정정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언론법 제 12 조)

동명이인의 경우에도 독자의 입장에서 보아 원문기사에서 지명된 자라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신문이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이 본인의 사망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긍정설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고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예, 신용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이고 부정설은 이를 인정하게 되면 고인이 이미 망각한 사실을 들춰내는 결과로 되고 상속인의 선전을 위해 악용될 염려가 있으며 이를 무한정하게 인정하게 되면 역사상의 인물로 된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간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유이다. 프랑스 법은 그 절충으로서 고인의 명예에 대한 중상 또는 모욕이 되는 경우에만 상속인 등에게 응답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법 제 34 조 2 항)

생각컨대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의 언론법의 규정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다른 신문사의 발행인이나 기자 등에게도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신문 그 자체가 지시된 경우에 신문자체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하나의 사실적 보도에 수인이 관계된 경우에 그 각자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정보도문이 게재되면 다른 사람의 청구권은 소멸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서 고찰해야 할 것인 바, 다른 사람의 정정보도문이 처음의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주장이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는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필요성의 유무를 따짐에 있어서는, 수인이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인의 정정보도문만 게재되고 나머지 사람의 정정보도문 게재가 없으면 독자의 입장에서 바른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질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다른 사람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필요성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2. 객체 (원문기사)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다. 위 각각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서 결국은 신문 및 잡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주기성이 없는 책(서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한, 그 주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매일, 매주, 매월, 매 계절마다 발행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이 주기를 어느 기간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나 독일의 대부분의 주에 있어서는 그 언론법에서 최고기간을 6개월로 규정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한, 특별한 사정으로 합본이 된다면, 그 기간을 넘어서 발행되더라도 상관은 없다.

또한 그 발간기간이 영구적일 필요는 없고 따라서 예를 들어 올림픽 기간 중에만 매일 발간되는 신문도 정기간행물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정기간행물의 성질은 이를 묻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학술잡지라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면 여기의 정기간행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기간행물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하여는 다양성(Mannigfaltigkeit)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다양성이 결여된 추록은 비록 정기적으로 발행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 자체로서 독자성이 없고 단지 전체작품의 종속적인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청의 고지사항만을 게재하는 관청의 인쇄물이나, 가격안내서 등은 비록 정기적으로 발행되더라도 여기의 정기간행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관보 등을 비롯한 위와 같은 간행물은 그 편집에 있어서 편집자에게 내용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발행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거나, 또는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그 편집의 자유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2) 사실적 주장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적주장에 대하여서 만이다. 따라서 가치판단에 대하여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언론기본법 제 49 조 제 1 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점에서 우리 법은 독일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고, 프랑스법의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실적 주장에만 국한하는 취지는 일방적인 보도로 인하여 독자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편견의 위험성은 사실보도의 경우에 가장 크게 문제로 되고, 가치판단의 문제는 각 독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사실주장과 가치판단의 구별이다. 이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로서 결국 개개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 기준으로 되는 것은 입증가능성(Beweiszuganglichkeit), 해명가능성(Klarbarkeit) 및 역사성(Geschichtlichkeit)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 주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동기, 목적, 심리적 상태 등 내부적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치 판단이라 함은 윤리적,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예술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극평론, 시사평론 등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한 그 보도의 형식은 묻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기사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신문논설, 르뽐, 독자투고,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한 게재물 등도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진이나 만화 등 상형적 표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다. 독일의 소수설은 Reichpressegesetz의 「기사(Artikel)」이라고 하는 명문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그 사진설명 등 언어적 표현에 대하여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Regensburger), 통설은 이에 반대하여, 첫째 흔히 사진의 경우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둘째 사진의 경우에도 정확치 못한 사진을 혼동하여 게재하든가 또는 사진을 조립(몽타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진을 조작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야 된다고 한다. 생각컨대, 독일의 통설의 견해가 타당하리라고 생각되며, 이 경우에 정정보도는 「반대사진」(Gegenbild)을 싣거나 또는 이에 상당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문제로 되는 것은 광고에 대하여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다.

이 점에 대한 독일의 각주의 입법례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즉 첫째로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예 : 바이에른 주, 헤센 주), 둘째 명문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경우(예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자아르란트 주 등), 셋째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하기는 하되 그 청구를 하는 자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부담시키는 경우(함부르크 주, 슈레스비히 홀슈타인 주)로 나뉘어진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먼저 종래의 독일의 통설이었던 긍정설은 이를 긍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첫째 광고에도 사실상의 주장은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한 이를 금하는 명문의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둘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 관한 사실적 주장이 우연한 사유로 신문사가 편집한 기사에 실렸느냐 또는 개인의 광고에 실렸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둘 아무런 이유가 없고, 셋째 부정설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사인간의 분쟁에 신문사가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되는 것은 책임 없이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다른 요건인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적절히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오늘날 독일에서 강력하게 대두되는 견해로서 첫째 신문사에 전혀 책임 없는 사유로 사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신문사가 손해를 입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고, 둘째 광고는 단지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해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우선 광고의 경우의 특성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특성은 첫째 그 광고의 내용작성에는 신문사는 전혀 개입할 권한이 없고 단지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서 행하여진다는 데 있고, 둘째는 그 광고를 게재하는 목적이 언론의 여론형성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금전적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첫째의 특성을 직시하여 정정보도를 허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보면, 일견 광고주의 의견만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없을 듯이 보이지만, 광고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독자의 편지나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한 게재물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권이 다툼 없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면 광고에 대하여도 정정보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둘째의 특성을 직시하면, 독자의 편지나, 외부인사의 게재물은 언론사가 그 내용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그 게재의 목적이 여론형성이라는 공익적인 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게재의 여부에 관하여는 언론사의 권한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광고를 독자의 편지나 외부인사의 게재물과 취급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 광고의 특성을 아울러 고찰하고, 언론사 및 광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목적에서 생각한다면, 광고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되 그 게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자의 부담으로 하게 하고, 다만 언론사에 대하여 피해자와 광고계약체결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사후에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광고주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Hans Kobl 의 견해도 동일)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정정보도문에 대해서 다시 정정보도청구권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생각컨대 이 문제에는 성질이 다른 3가지의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첫째로 원래의 정정보도문의 대상인 원문 기사를 작성한 자가 다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정보도문은 원문 기사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어야 하고, 또한, 원래의 정정보도문은 언론사의 게재여부의 재량권이 없이 법률상 의무로서 게재된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 2 차의 정정보도청구는 후술하는 요건인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반드시 일률적으로 제 2 차의 정정보도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원래의 정정보도문에 관련된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삼자는 일반적인 요건에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셋째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정정보도문의 앞이나 끝에 전주 또는 후주의 형식으로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 각주의 언론법의 통일된 태도이다.

끝으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보도된 사실적 주장의 내용은 이것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바꾸어 말하면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언론기본법이 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겠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자에게 응답의 기회를 주어서 일방적보도로 인한 편견의 위험을 배제하고,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어떤 신문에 「갑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기사가 진실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갑은 정정보도청구권을 가지고 그 권리의 내용으로서 갑은 「물건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또는 병에 걸린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원래의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되는 때에는 상당수의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진실에 반하든가 또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정정보도가 허용되지 않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언론기본법이 채택한 「정정」 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의 부정확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언론기본법 제 49 조 제 7 항은 독일의 여러 주의 언론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국가 등의 공개회의(국회 등)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법원의 공개재판의 경우에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 이유는 국가 등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당연히 서로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위 반대의 견해를 서로 주장하면서 교환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정정보도청구권을 통하여 다시 반복하는 것이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공표되었을 것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그 형식은 이를 묻지 아니하므로 확실한 사실인 것으로 보도된 경우나,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경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나, 또는 「소식통에 의하면」이라는 형식으로 보도한 경우나 모두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

언론기본법 제 49 조 제 1 항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후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함께 정정보도청구권을 과도하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언론활동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그의 의견에 반하는 모든 보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 이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부담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요건은 정정보도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규정 자체의 문언으로부터만 보면 사실적 주장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angegriffen)든가 또는 침해 받은(verletzt)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경우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물론이지마는 과연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인가. 이 점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의 입법례 및 본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Baden-Wurtemberg 주의 언론법 제 11 조 제 1 항을 보면 「정기간행물의 책임 있는 편집자 또는 발행인은 그 간행물에 게재된 사실상의 주장에 관련되는(betroffen) 개인 또는 단체의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일의 다른 주의 언론법도 이와 동일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독일의 Reichspressegesetz 도 제 11 조에서 「관련되는」(beteiligt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침해라든가 공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권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위 권리는 보도된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자기에 관해서 보도가 행하여진 경우는 다른 요건을 구비하는 한 그 본인의 주장을 게재하도록 하여 정확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려 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공격 받았거나, 침해를 받은 경우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위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사실적 주장에 관련되었거나, 언급되었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의 법은 독일에서와 같이 「관련되었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를 받았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경우 중에서 「칭찬 받은 경우」(독일의 통설은 칭찬 받은 경우에도 관련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를 제외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독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는 결국 가능한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언론의 이익과 가능한 한 넓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개인 등의 이익과의 서로 대립되는 2개의 이익의 합리적인 조화의 문제라고 한다. 그리하여 보도 내용과 피해자의 고유한 이익 영역간에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요한다.

따라서 흡연자, 음주자 전반에 대한 비난적인 보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독일의 판례에 나타난 예를 보면 스페인 행의 관광모집을 업무로 하는 베를린의 한 여행사가 스페인여행에는 천연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잘못 보도한 베를린 신문의 보도때문에 현저히 예약이 줄어 들었음을 이유로 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요구되는가 또는 간접적인 연관성으로 족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프랑스 법에 의하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독일의 다수설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는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당, 회사, 협회 등과 그 구성원사이, 학교와 학생사이, 친구들 상호간에는 어느 일방에 대한 보도가 있다고 해서 타방에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할 관련성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공무원에 대한 보도는 그 공무원 소속의 관청의 이익에 관련이 있고 (Löffler의 견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불충분한 교육에 관한 비난이나, 처에 대한 비난적인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나, 남편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관련성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성은 반드시 그 성명의 특징에 의하여 인정될 필요는 없고, 설사 성명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편견 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또는 그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가 별 어려움 없이 이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를 받았다」는 개념을 「관련성」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이 그 성명으로 특정되어 보도되는 한 이 요건은 특별히 따져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결과로 된다. 그리하여 판결문의 작성에 있어서도 먼저 특정인이 성명으로 특정되어 어떤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인정하면 이에 기해서 바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할 수 있을 것이다(즉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사실과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시 사이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피해를 입은 자라는 설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련성의 요건은 청구인이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주장하면 족하고 별도의 입증이나 소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우리 언론기본법은 제 49 조 제 3 항 단서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권리자체의 내부적 제약(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의 금지)으로부터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앞서 본 요건들은 모두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요건들임에 반하여 이 요건은 실질을 고려하는 요건으로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정당한 이익이라는 요건은, 정정보도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언론활동의 마비 내지는 위축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중요한 요건으로서, 앞서 본 관련성의 요건과는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위 관련성의 요건은 형식적인 면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사를 막으려고 함에 반하여 이는 실질적인 면을 검토한다고 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당한 이익」이라는 이 요건은 정정보도청구권의 형식적 요건만을 충족시켜 이를 남용 내지는 악용하려는 자로부터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규정의 형식으로부터 미루어 보면 이 「정당한 이익」의 요건은 언론사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정당한 이익은 어떤 경우에 존재할 것인가. 이는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①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이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② 원문기사나 또는 정정보도 외 내용의 사소성(Belanglosigkeit)이다. 이의 있는 원문기사의 내용상의 잘못이나, 이에 대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그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되어, 이의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예를 들어 세인의 주목을 끄는 살인사건의 소송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31 세가 아니고 30 세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정정보도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다.

③ 정정보도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다.

④ 정정보도의 내용이 독자를 욕망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독자를 기망하는지의 여부는 평균적인 독자의 경우에 잘못된 추리를 할 염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정정보도가 사실상 발표된 때 즉 독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⑤ 또한 인터뷰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경우와 같이, 공표에 대한 사전의 동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청구는 권리의 남용이 되어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⑥ 하나의 보도에 대해서 내용이 동일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반복해서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⑦ 하나의 보도에 수인이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주장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그 중의 1인에 대한 정정보도의 게재가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첫번째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타인이 주장하는 바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⑧ 언론사측에서 어떤 보도가 있을 후 스스로 그 보도의 부정확성에 관해서 보도를 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보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원래의 보도를 할 당시에 그 보도의 일부로서 그 의혹이 있는 점을 기술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정이 다르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보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보도가 행해진 후 속보의 형식으로 후에 이르러서 앞서 한 보도가 정확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⑨정정보도의 신청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 적기를 상실하여 현실성(Aktualitat)이 없을 때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다. 즉 어떤 기사가 보도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기사 내용이 독자의 머리 속에서 완전히 망각된 후에 새삼스럽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연 태만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를 판단하여 정당한 이익의 유무를 따질 것이다.

⑩원문기사의 내용을 왜곡하여 정정보도의 내용으로서 기재하는 경우도 정당한 이익이 없다. 즉 원문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삼자의 주장으로서 보도하였는데도, 정정보도의 문안에서는 마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주장되는 경우이다.

⑪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이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과 그 본질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감(Nuance)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내용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Nuance 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⑫정정보도의 내용이 자기의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계없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거나, 또는 기타의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언론사(자기가 경영하는 신문사 등)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 만으로서 정당한 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보도가 행해진 언론사와 독자적인 다른 언론사 사이에서는 그 독자의 범위가 상위하여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I.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언론기본법은 제 49 조 제 4 항에서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중요한 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정보도문에는 먼저 이의하는 원문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특정은 원문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옮겨 적을 필요는 없고 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2. 다음으로 정정보도문의 사실적 진술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이는 원문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있어서는 설명을 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3. 정정보도문의 작성형식에 관하여는 원문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정정보도신청내용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 작성 형식이나 문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외국의 예에 관해서는 그 설명을 다음 기회로 미룬다. 참고로 실무에 정정보도문의 형식을 알기 위해서는 언론중재(1982. 가을. p.139, 1982. 겨울, p.168)에 게재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4. 정정보도문은 관련된 자의 사실적 진술을 게재하는 것이므로, 그 보도문을 실질적으로 고찰해 보면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는 원문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되는 경우에 이에 「대립되는 정정보도문」(entgegen gesetzte Darstellung)의 게재를 요구하는 경우와, 둘째는 원문기사의 내용자체는 진실에 합치하기는 하나 그 보도가 불충분하여 독자로 하여금 잘못된 인상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정정보도문」(ergänzende 또는 zusätzliche Behauptung)의 게재를 요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5.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사실주장의 기회를 가지게 하여 그 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그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형사상 처벌 받을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독일의 각 주의 언론법에서는 「형사상 처벌 받을 내용」(strafbaren Inhalt)을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반하여 우리의 언론기본법은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의 법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 넓게 형사상 처벌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금하고 있다.

6. 정정보도문의 진실성의 문제

이의 있는 원문기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그 진실성의 여부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원문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명예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진실성은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인가? 정확한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면 정정보도문의 진실성은 당연히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권의 다른 하나의 목적인 피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원문기사가 보도된 후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의 사실적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언론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정보도문의 진실성을 조사하여 이것이 확인된 후에야 그 게재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미 시기를 놓쳐서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릴 염려가 있다. 또한 「무기평등의 원칙」에서 고찰해 보더라도,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기사를 보도하였음에 반하여 (물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언론사에서는 내부적인 조사나 감독을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박 기사인 정정보도문의 게재에 있어서만 엄격한 진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언론사에게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독일 각주의 언론법 및 우리의 언론기본법은 이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offen sichtlich)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독일의 학자들은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첫째 편견 없는, 평균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부정확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분명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자료(Information squellen)로서는 신문, 방송, 이미 공표된 연구결과, 역사적 사실, 현재의 외환시세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둘째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원에 알려져 있는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법원에 알려져 있다는 것은 판결법원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예를 들면 다른 소송절차에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권자의 진술이나 주장자체로부터 판단하여 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부정확성이 법원에 알려져 있는 경우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정정보도문 공표의 시이고 구두변론종결의 시가 아니라고 한다. (0-LG Hamburg Afp 77, 395/396 판례)

7. 기타의 문제점들

언론기본법 제 49 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문은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정정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정정문의 게재에 대해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간접적으로 권리의 행사를 제약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각국의 입법례는 무상으로 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정문의 게재를 위해서 귀중한 지면을 무제한으로 할애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신문사 등에 대해서 참지 못할 부담을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일정의 양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을 처음으로 창출해 낸 프랑스에 있어서는 원래 법정의 제한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그 후의 경험에 의하면 특히 선거기간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많은 지면을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것이므로 설사 비용이나 그 초과지면에 해당하는 광고료 등을 지급하더라도 원래의 기사보다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정정문은 게재될 수 없다.

그리고 정정문은 기사의 부정확성을 공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측이 이를 극히 혐오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독자의 주의를 끌지않은 방법으로 게재하려는 언론사측의 노력은 이를 이해할 만 하지만, 정정문이 원문기사에 의한 독자의 인상을 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상 원문기사와 적어도 동일한 상해에서 게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문기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나아가서 동일한 활자로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을 요한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 및 동일한 한자라고 하더라도, 잡지의 경우에 가끔 보이는 기사구성이나 총 면수의 변화라든가 신문에서도 가끔 보이는 지면구성변경 등의 사정으로 기계적으로 「동일의 장소」에 게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게재장소의 변동은 청구권리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법적인 것으로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상 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동일의 장소」는 결국 실질적으로 상당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원래의 기사를 보도한 신문 등이 후에 이르러 폐간 되어 버린 경우에는 정정보도문은 어떻게 게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바, 이는 결국 그 신문사 등의 비용부담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다른 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문기사가 사진인 경우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의 청구도 가능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경우 그 정정보도는 원래 사진과 동일한 크기의 사진 또는 이와 동일한 범위 안에서의 문자에 의한 정정문으로서 대체하여 게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정보도문은, 신문, 통신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게재하여야 하며, 또한 이는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는 없다(언론기본법 제 49 조 3 항 및 5 항). 그리고 원래의 보도를 함에 사용된 언어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정정보도문도 이와 동일한 언어로서 작성되어야 한다. 반대설로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자가 사용하는 언어 또는 그 자가 주장하는 언어로서 게재하여야 한다는 설도 있으나, 원래의 보도문에 의하여 대상이 된 동일한 독자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면 반대설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IV.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1. 상대방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발행인이나 편집인」이다. (언론기본법 제 49 조 제 1 항)따라서 정정보도청구사건 심판규칙(대법원 규칙 제 753 호)의 제 2 조 제 1 항에서 「언론기업」을 피신청인으로 한다는 규정은 법률에 어긋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발행인이나 편집인」을 상대방으로 한 이유는 이러한 자들이 실질적으로 신문 등의 기사내용을 편집할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도 결국은 이러한 자에 의해서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문기사 보도의 때와 정정문의 게재의 때와의 사이에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행인이나 편집인」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 독일의 학설을 보면 첫째 언론법에 따라 정기간행물에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표시된 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형식설 또는 지명설이 있고, 둘째로 실질설 중에도 실제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활동설이 있으며 셋째로 실제로 활동하는 것 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경영주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가 부여되어있는 것을 요한다는 지위설이 있는 바, 현재 독일의 통설은 지위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문제호 밑 부분의 간행요목란(Impressum)에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가 실제로도 그러한 지위를 부여 받고, 그러한 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제는 없다. 다만 수인이 업무분야를 나누어 활동하거나 또는 아무도 이러한 자로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실제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활동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상의 문제로서는 정정보도청구권자가 발행인이나 편집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언론사 자체 또는 기업주를 상대로 하여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게 하든지 또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의 표시가 신청서 자체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 표시를 정정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실무에 나타난 피신청인의 표시를 보면 「주식회사 ○○신문사 발행인 ○○○」로 표시하고 그 송달장소는 개인의 주소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기업의 소재지를 표시하고 있다.

2. 행사의 방법

(1) 언론사에 대한 청구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선택적으로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언론기본법 제 49 조 제 1 항 및 제 50 조 제 4 항)

위 양 청구는 선택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언론사에 먼저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근거는 언론기본법 제 50 조 제 4 항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 2 가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의의 대상인 본문 또는 사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률은 제 49 조 제 3 항에서 언론사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지체 없이 정정보도의 제목, 내용, 크기, 게재일자나 위치 등 정정보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신문, 통신의 경우에는 7 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협의 내용에 따라 가감 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의 머리나 끝에 편집자의 주석을 붙일 수는 있으나, 사실적 설명에 국한되고 동일한 판에 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금지됨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2)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

피해자는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는 바, 언론사를 거친 경우에는 언론사에 청구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바로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 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필요한 전치절차로서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그 이유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와 달리, 값비싼 대가를 치루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국의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는 입장인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언론사에 대하여 지나친 거부반응이나 생소한 느낌을 주는 것을 피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또한 무리 없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태도라고 생각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는 언론기본법, 동시행령과 언론중재위원회운영규칙 및 언론중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중재는 신청이 접수된 후 14 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고(법 제 50 조 7 항)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다. (법 제 50 조 6 항)

(3) 법원에 대한 정정보도명령신청

언론기본법은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 법원에의 출소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은 민사적 구제절차가 부여되는 언론법상의 특수한 권리임이 명백히 되었고 신속한 반대진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취지에 따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처분절차가 준용되고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한 절차는 정정보도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의미한다. 또 동 법의 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사건은 가처분절차를 준용하되 ①본안소송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며 ②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을 요하지 아니하게 한 서독의 입법례를 본받고 있으므로(법 제 51 조 3 항 단서 및 민사소송법 제 697 조, 제 705 조) 소송법적으로 보아 특수한 소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법 제 51 조 4 항에 따라 제정된 '정정보도청구사건심판규칙' (1981. 2. 23 대법원 규칙 제 753 호)에 의하면 ①정정보도명령의 단행 가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과 관련하여 그 심리에 있어서는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여 (동 규칙 제 3 조 2 항) 법적인 청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②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이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가처분결정에 있어서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 700 조 2 항 내지 4 항)과 가압류해방금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 702 조)은 적용이

배제되고('동 규칙 제 3 조 2 항 및 제 4 조 3 항), ③정정보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 703 조, 결정에 의한 경우)이나 항소(판결에 의한 경우)만이 허용되도록 규정되고있다(동 규칙 제 5 조).

정정보도명령신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 51 조 1 항 단서). 전치절차로서 중재신청 및 그 불성립은 소송요건이 되므로(법 제 51 조 1 항 본문), 이를 구비하지 못한 신청은 부적법 각하된다(동 규칙 제 3 조 1 항 참조). 정정보도명령신청에 대한 제 1 심 재판은 피고(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법 제 51 조 2 항). 정정보도명령신청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위 규칙 제 2 조가 규정한다.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중재사건 기록의 송부를 촉탁함과 동시에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 3 조 1 항 및 3 항).

법원이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및 회수와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 4 조 1 항). 특히 제목의 내용과 활자 크기도 명시하고 게재부위 및 크기에 관하여는 제 0 면 또는 사회면 좌상단 0 단 크기 등도 명시하여 신문 조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나타난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의 형식에 관하여는 이미 본 잡지에 게재된바 있는 82 카 18633 사건(언론중재, 1982, 가을, p. 137) 및 82 카 27454 (언론중재, 1982, 겨울, p. 168)호 사건의 판결문의 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법원은 정정보도의 내용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참작하여 정해져야 한다(동 규칙 제 4 조 2 항). 그 기준에 관하여는 앞서 언론사의 협의절차와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서 언급한 무기대등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신청된 정정보도문이 부정확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진술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전술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삭제 또는 수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의 의미나 전체적 취지를 일탈할 수는 없고, 수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정정보도명령의 재판소에는 민사소송법상 신청인의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과 피신청인의 가압류해방금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법 제 3 조 4 항, 제 4 조 3 항, 민사소송법

제 700 조 2 항 내지 4 항, 제 702 조). 정정보도명령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재판은 피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 4 조 4 항).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는 이의신청 또는 항소만이 허용된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은 가처분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확정여부와는 상관없이 바로 집행력이 생긴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급심의 판결에 집행력을 주기 위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경우에는 가처분절차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항소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지않고, 또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 715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 법 제 70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소제기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되는 동 법 제 47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동 법 제 703 조의 적용에 있어서 동 법 제 473 조의 준용을 인정한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상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의 판례 (대법원 1969. 2. 18 결정 6921, 판결집 17 권 1 집 213 면, 대법원 1971. 11, 12 판결 71 그 14 총람 16 권 413 면)는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이러한 규정의 준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사소송법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할 것이다(독일민사소송법 제 942 조 제 3 항 및 제 707 조 참조).

따라서 만일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이에 따른 정정보도가 행하여지고, 그 후에 상급심에서 위 판결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의 가처분사건에서 특히 명도단행 가처분의 결정이 내려진 후 본안에서 명도청구권이 부인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종래의 법률관념에서 보면 심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는 권리보호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론은 기존의 가처분제도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피보전채권을 소명하여 권리의 보존을 꾀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실질적인 근거로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살펴보면,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면, 즉 복잡한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형식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formaler Charakter des Entgegnungsrechts)

V. 정정보도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의 효과

법원의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언론사측에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며 어떻게 이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전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는 경우와, 게재를 하기는 하였으나 판결의 내용대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혀 새로이 게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일부 잘못된 부분만을 다시 게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경미하여 그대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기는 바, 원칙적으로는 전혀 새로이 게재하여야 할 것이나 어느 것이 타당한 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프랑스에서 민사상의 강제집행의 방법 및 손해배상의 청구 이외에 형사상의 처벌 [보통의 경우에는 180 프랑 이상 1,800 프랑 이하의 벌금 그러나 선거기간 중에는 판결 후 24 시간 이내에 게재하지 아니하면 300 프랑 이상 6,000 프랑 이하의 벌금 또는 6 일 이상 3 개월 이하의 금고(emprisonnement)에 처하도록 한다(프랑스 언론법 제 13 조 제 1 항 및 제 9 항)]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형사상 처벌 규정은 이를 두지 않고 있다.

민사상의 강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함은 물론이지만, 강제집행법상으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한 강제가 가능할 것인가 이다. 생각컨대, 정정보도명령의 집행은 이른 바 불대체적인 이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 693 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이 허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방법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는 동안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위 금전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인 바, 이론적으로는 상대방에 금전적인 위협을 줌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기에 족한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실무상으로는 정정보도를 명한 정정문이 게재될 위치 및 그 크기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 얻어질 수 있는 액수보다는 적어도 낮아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언론사측에서는 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수입으로 간접강제의 액수를 충당해 버림으로써 집행을 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간접강제는 수소법원의 관할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위치는 정정보도사건을 처리한 그 법원으로 하여금 간접강제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적격일 것이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법원의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정보도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 하여금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간접 강제 결정에 관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결정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 실무에 나타난 유일한 판례로서는 언론중재(1982. 겨울, p.172)에 게재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시)

주 문

1. 채무자는 본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0 일 이내에 당 법원 _____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표시된 _____을 이행하라.

2.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전항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위 이행이 끝날 때까지 지연 1 일에 대해서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그리고 위 간접강제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517 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위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 517 조 단서참조)

VI.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사실적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외에 민법상 일반의 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이와는 따로 사죄광고를 청구할 수 있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구제방법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방법이

실현되었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목적의 공통점은 없으므로 예를 들어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VII.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정정보도청구권의 제도를 도입하여 언론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로 획기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이 문제에 관한 뼈저린 역사적 경험을 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의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특히 신문사 등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종래에는 언론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종래의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자세로서 취재 및 보도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언론에 대한 간섭은 무조건으로 언론의 탄압이고, 이는 무조건적으로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릇된 생각이고 언론의 자유에 못지않게 개인의 기본권도 역시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서 특히 정정보도청구권의 제도를 남용하여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도 또한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정정보도청구권의 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2 개의 중요한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그 성패의 열쇠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끝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첫째로는 언론사는 항상 진실한 보도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사죄광고가 성립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정정보도의 청구가 허용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아직은 투철하지

못하고, 또한 언론기본법 시행의 기간이 일천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아직 일반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대부분의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문기사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인 것이고, 현재까지 법원의 실무에 나타난 사례들도 모두 이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언론이 진실한 보도만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채도하는 정정보도의 요구로부터 일단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진실한 보도를 하였다 하여 모든 정정보도청구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보도의 내용을 보충(erganzen)하여, 이에 누락되었거나 간과된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여(zusätzlich)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요구는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 수 있지만, 여론형성이라는 언론기관의 공익적 특수성 및 일단 기사화되어 보도된 이후에는 이로 인한 독자의 인상을 제거하기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담을 언론사의 입장에서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진실에 부합되는 보도를 하는 이외에도, 그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피상적인 사실만을 보도함에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의 실제적인 동기, 원인 등을 보도하여 독자가 정확한 인상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보도된 사건에 반대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쪽의 의견도 함께 보도하여 편견 없는 여론형성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책임한 언론, 아무런 제약 없는 자유, 방종한 언론의 시대는 언론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서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언론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중대함, 언론이 가지는 민주사회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인 여론형성이라고 하는 신성한 기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여 책임이 뒤따르는 언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필자 주>

본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종류의 언론기관 중 가장 대표적인 신문, 잡지의 경우를 상정하여 서술하였으며, 라디오, TV 등의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앞의 서술을 유추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고, 또한 개개의 부분에 대하여 일일이 주를 다는 것은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참고한 문헌으로서 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현재까지의 유일한 문헌인 박용상 판사님이 쓰신 본지 창간호의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가 있으며, 일본의 문헌으로서는 「현대손해배상법강좌」 중 「명예, Privacy 편」 제 267 면 이하의 「반박권」(산구준부 씀)을 참고하였고, 독일의 문헌으로서는 Seitz, Schmidt, Schoemer 공저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신문, 영화, 라디오 및 TV에 있어서의 반박권)(C. H Beck 사 간) 및 Dr. Hans Kobl 이 Erlangen-Nürnberg 대학에 Dissertation(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여 통과된 「Das presserechtliche Entgegnungsrecht und seine Verallgemeinerung」(언론법상의 반박권 및 그 일반화)을 참고로 하였다.

참고로 우리의 언론기본법 중 정정보도청구권 부분의 초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본보기로 된 것은 독일의 Baden-Wurtemberg 주의 언론법이었다고 하는 바, 우리 법의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바가 적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 중 반론권에 해당되는 부분을 번역하여 보았는 바 다음과 같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정보도사건에서 흔히 쓰여질 활자의 크기를 예시하여 실무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일 Baden-Wurtemberg : Gesetz über presse (1964. 1. 14)

제 11 조 (반론권)

① 정기간행물의 책임 있는 편집자 또는 발행인은 그 간행물에 게재된 사실상의 주장에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위 의무는 그 사실상의 주장이 실린, 간행물의 모든 부수적 진술에 대하여도 미친다.

② 1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위 공표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거나, 위 반론이 그 범위로 보아 적당하지 않거나, 또는 단지 사업상의 거래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반론 게재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반론이 이미 된 원문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반론은 사실상의 진술에 국한되어야 하며 형사상 처벌 받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4 반론은 서면의 형식을 요하고, 관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 되어야 한다.

5 관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반론이 늦어도 공표 후 3 월 이내에 책임 있는 편집자 또는 발행인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해서, 그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반론인은, 이를 수령한 후 아직 인쇄가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간행물에, 또한 다투어진 원문과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활자로 삽입하거나 삭제됨이 없이, 게재되어야 한다. 반론문은 독자 편지의 형식으로 게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게재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반론을 게재하려는 자는, 사실적 진술에만 국한하여야 한다.

④ 1 반론게재 청구권에는 통상의 소송방법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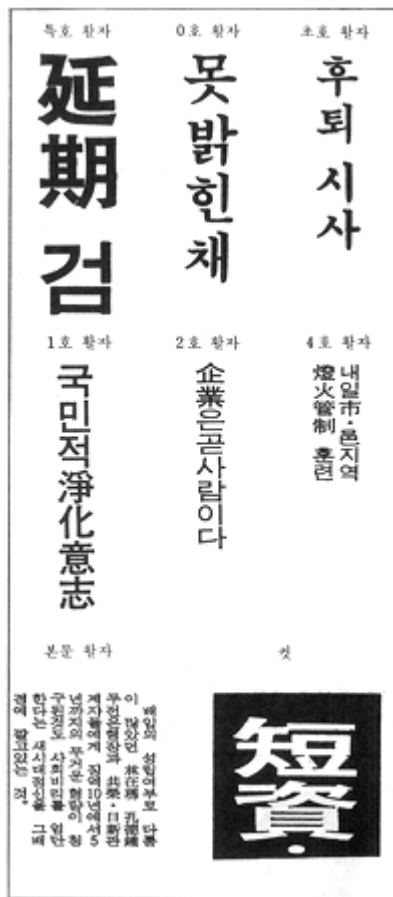
2 법원은 관련된 자의 청구가 있으면 책임 있는 편집자 또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반론문을 제 3 항의 형식으로 공표하게 할 수 있다.

3 이 절차에는 민사소송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위 청구권의 위협성 (보전의 필요성)은 증명 되어질 필요가 없다. 본안소송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연방, 주, 공공단체 및 법원의 입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기관의 공개적인 회의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위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활자의 크기 예시>

활자 호수는 각 신문사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또한 활자체도 명조체와 고딕체 등 여러 체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괴팅겐대학 연수
- 사법시험 제 14 회 합격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저술: 논문 「가정적 인과관계론」
-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